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497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6. 11. 7.
4. 회부일자 : 2016. 11. 8.

Ⅱ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(안)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Ⅲ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Ⅳ. 주요내용

○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〈 **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**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(안)	2016예산	증 감	%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	0	0	0	0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22,060,908	5,933,112	16,127,796	271.8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계획안은 2016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97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

○ 감채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9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한바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도 866억 84백만원과 2013년도 306억 1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, 2017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0원으로 하여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.

○ 이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2항에 의해 “지방채가 없거나, 학교신설의 경우처럼 지방채 상환재원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없고, 기 발행된 교육채도 모두 국가부담이라는 점에서 2017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[표-1] 2013~2017년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, 기준 : 2016.11.04.)

사 업 명		차입선	발행일 (예정일)	이율 (변동)	발행액	상환방법 (상환기간)	2016년말 상환잔액	2017년말 상환잔액
국가부담	2013 학교신설	금융채	2014.02.28.	3.62	131,082	2년거치 3년분할상환 (2016~2018)	87,388	43,694
	2014 학교신설		2014.09.19.	3.18	59,514	5년거치 10년분할상환 (2020~2029)	59,514	59,514
	09년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		2014.12.24.	3.21	182,629		182,629	182,629
	2014년 발행계				**373,225**		**329,531**	**285,837**
	교원명예퇴직	금융채	2015.03.26	2.69	256,174	5년거치 10년분할상환 (2021~2030)	256,174	256,174
	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	공자기금	2015.11.20	2.267	268,763		268,763	268,763
	교부금차액보전 (누리과정)	금융채	2015.12.24	2.62	137,722		137,722	137,722
	2015 학교신설		2015.12.29	2.63	152,410		152,410	152,410
	2015년 발행계				**815,069**		**815,069**	**815,069**
	교부금 차액보전	금융채	`16.4.26.승인 `16. 12월 예정	2.43	0	5년거치 10년분할상환 (2022~2031)	152,638	152,638
	학교신설비			2.43	0		51,013	51,013
	교육환경개선	공자기금		2.43	0		217,414	217,414
	2016년 발행계				**0**		**421,065**	**421,065**
	교육환경개선	금융채		2.43	0		0	270,516
	2017년 발행계				**0**		**0**	**270,516**
합 계					**1,188,294**		**1,565,665**	**1,792,487**

나.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[1]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7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2016년도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9억 9백만원과 이자수입 2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9억 33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.

[표-2] 연도별 기금운용계획(자체재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계
청사 이전 (신청사)	**5,504,529**	21,728,471	28,333,000	29,134,000	84,700,000

1) 수입계획

○ 2017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161억 28백만원으로,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9억 31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 9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수입액 중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출연금의 주된 내역은 은로초 토지교환 차액금, 도곡중(산6-40) 토지매각,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 등 129억 28백만원과 2016년도 서소문 부지 매각대금 중 미반영분 23억원, 2016년도 하반기 교육지원청별 토지매각대금 분납분 3억 53백만원, 2017년도 하반기 교육지원청별 토지매각대금 분납분 3억 5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--

1)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원(예정) 및 자체 예산 847억원이 필요하며,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 약 97억원이 필요한 상황임(행정관리담당관-4723).

○ 다만,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당시 현재의 학교현실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큰 반면 교육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매각대금 전체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서소문 부지 매각대금 23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동 기금수입에는 서소문 부지매각대금이 다시 포함되어 제출되었는바, 통상적으로 한 번 삭감된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그대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동, 긴급한 필요성의 대두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3]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기금 재원별	'16년도 조성액(a)	'17년도 기금운용계획		'17년도 말 조성액(d=a+b-c)	비고
		수입계획(b)	지출계획(c)		
합 계	5,933,112	16,127,796	5,504,529	16,556,379	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5,908,775	15,930,655	5,504,529	16,334,901	
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	24,337	197,141	-	221,478	

[표-4] 기금 조성 재원별 세부현황

(단위 : ㎡, 천원)

연도	수입액 (교특 전입금)	비 고
2016	5,933,112 (5,908,775)	- 서빙고(4-16, 866) : 4,626,050 - 서소문(85-2, 85-5, 143.4) 602,926 - 기타 매각 : 679,799 - 예금이자 : 24,337
2017	16,127,796 (15,930,655)	- 은로초 토지교환 차금 : 1,862,280 - 도곡중(산6-40, 1,917) : 6,000,000 -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(자양동 57-153, 3,577) : 5,065,443 - 기타 매각(2016하반기) 350,035 - 기타 매각(2017) 352,897 - 2016. 추가경정예산 미반영액 : 2,300,000천원 - 예금이자 : 197,141천원

2) 지출계획

○ 2017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신청사 설립과 관련한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건설비 55억 5백만원으로,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.

○ 현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舊 수도여고 부지에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, 동 부지에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,

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협의 및 요청을 총 5차례 하였고(붙임 참조), 지역주민과의 협의[2] 및 용산구청과 서울시로부터의 보완사항[3] 등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에 현 학교용지의 공공청사 부지로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

동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,

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으며, 가까운 시일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,

---

2) 주민의견(2016.8.30.)
- 교육청이전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조속한 상정 요구
- 후암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원 및 갈월동 주민대표는 소로3-11에 대하여 6m에서 8m로 도로 확보와 추가 5+2m 전면공지(건축한계선)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

3)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관련 조치계획 보완 요청(용산구 도시계획과-11680, 2016.10.26.)
- 남측 완화차로에 계획한 무상귀속(221㎡) 부분을 서측도로에 조성하여 추가 도로 확보 검토
- 공공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계획 결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 검토

2017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명확히 확정된 이후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아울러 현재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사용하지 못할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이상으로「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붙임] 도시계획 시설 협의 경과

날짜	내용
2006.04.27.	[서울시교육청 청사 신축·이전 계획(안)] -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지로 청사이전 추진 결정
2009.04.02.	[구)수도여고 부지 이전 검토(안)] - 舊수도여고 부지로 청사이전 추진 결정
2009.04.16.	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협의 (용산구청→서울시교육청)
2009.11.26.	**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수도여고 이적지 청사 이전 협조 요청** (서울시교육청→용산구청, 서울시청)
2010.12.02.	**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요청** (서울시교육청→용산구청, 서울시청)
2011.04.14.	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 열람공고 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(서울시교육청→용산구청, 서울시청)
2012.11.05.	**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** (서울시교육청→용산구청, 서울시청)
2013.02.13.	용산구청과 서울시교육청사 이전을 위한 MOU 체결
2013.03.12.	서울시교육청사 이전 세부추진계획(안)
2013.07.25.	도시계획결정 용역계약 체결
2013.08.09.	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(특별교부금 400억원, 자체재원 847억원)
2013.12.04.	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시의회(교육위원회) 심의
2014.06.20.	**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(교육청 → 용산구청)**
2014.07.25.	도시계획시설 변경(안) 주민열람공고(용산구청)
2015.05.28.	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(舊수도여고부지 제척 결정)
2015.06.02.	**도시계획시설 변경 재요청(교육청 → 용산구청)**
2015.06.11.	도시계획시설 변경(안) 주민 재열람 공고(용산구청)
2015.07.02.	용산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실시
2015.07.20.	용산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요청(용산구청 → 서울시)
2015.09.25.	관련부서 협의결과 알림(용산구청 → 교육청)
2016.05.25.	제7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"보류"
2016.07.07.	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정
2016.07.13	도로 확폭 민원인과 4차례 협의 설득 (반대 → 찬성)
2016.09.23.	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재상정(교육청 → 용산구청)
2016.09.29.	청사이전 관련 유관 기관 협의회 개최(미국대사관, 서울시 등)
2016.10.26.	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조치계획 보완요청(용산구청 → 교육청)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13428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회계법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제정]

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[시행 2014.10.16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742호, 2014.10.1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,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5.23.)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(단서 삭제 2013.5.23)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4.10.16)